

2023 TR-15-0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2023 TR-15-0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CONTENTS

교육환경보호원은?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5
 (1. 교육환경평가서 전문검토/ 2.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 / 3. 사후관리
 기술지원 /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5.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I 교육환경평가 13
 1. 주요 내용 14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17
 3. 교육환경평가 기준 20
 4. 교육환경평가 절차 25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32

II 사후관리 35
 1. 주요 내용 36
 2. 사후관리 절차 37

III 교육환경보호구역 45
 1. 주요 내용 46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54

IV 교육환경정보시스템 59
 1. 주요 내용 60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63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 68

[부록] 공사에 관한 설명 73



표 목차

〈표 1〉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16
 〈표 2〉 교육환경평가 대상 18
 〈표 3〉 교육환경평가 시기 19
 〈표 4〉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21
 〈표 5〉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상세기준 23
 〈표 6〉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처리 항목 30
 〈표 7〉 이행사항 조사·확인 시기 및 방법 40
 〈표 8〉 시기에 따른 주체별 사후관리 내용 40
 〈표 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49
 〈표 10〉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62
 〈표 11〉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① 64
 〈표 12〉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② 65
 〈표 13〉 정보관리시스템(평가현황)사업상세페이지 평가진행처리 단계 소개 67
 〈표 14〉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 69
 〈표 15〉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교육(지원)청)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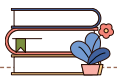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15
 〔그림 2〕 사후관리 절차도 43
 〔그림 3〕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 47
 〔그림 4〕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57
 〔그림 5〕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61
 〔그림 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https://epss.schoolkeepa.or.kr/mgr>) 61
 〔그림 7〕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https://cuzm.schoolkeepa.or.kr>) 61
 〔그림 8〕 교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화면 구성 63
 〔그림 9〕 교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평가현황 화면 구성 64
 〔그림 10〕 교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평가 진행 처리 단계 66
 〔그림 1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도 68
 〔그림 12〕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교육(지원)청) 70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발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지원 등 교육환경보호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되고 한층 발전하도록 지원합니다.



설립목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립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비전 및 목표

비전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

미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문기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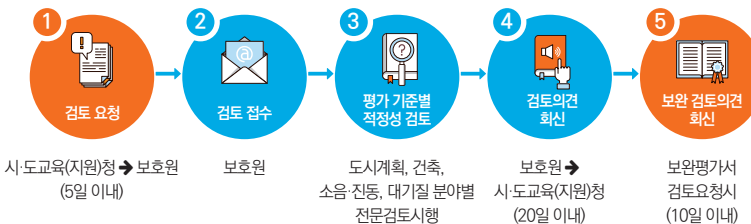
1. 교육환경평가서 전문 검토

사업목적



교육환경평가서 검토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법정 사무이며,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 들어서는 학교 또는 기존 학교 주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운영체계



추진결과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설 97건, 기존 775건)

872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학교
(신설 223개교, 기존 1,600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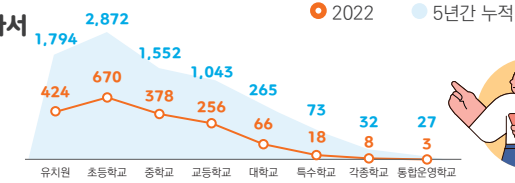
1,823개교



학교급별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학교 수 (단위 : 개교)

1,823

누적 7,658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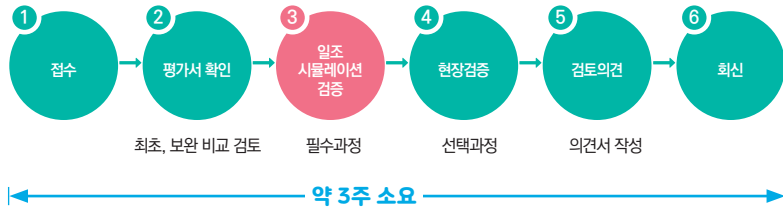
교육환경평가서 주요 검토(일조검증)

사업목적



학교 일조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환경평가 일조 부문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고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쾌적한 학교 일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교 일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측량, 건축도서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생성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된 모델링, 일영도와 일영시간의 오류를 확인합니다.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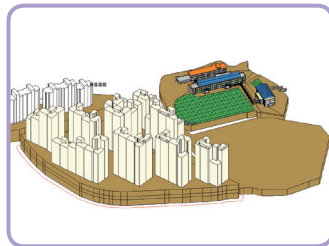


추진결과

2020년 : 6건

2021년 : 6건

2022년 : 23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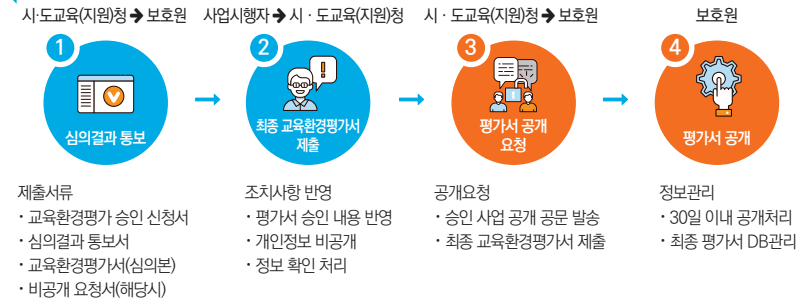
2. 교육환경평가서 정보공개

사업목적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국민들에게 공개 대상 교육환경평가서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 사업 관계자의 정보공개 확대 요구에 대응합니다.

운영체계



추진결과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20	7	4	12	4	0	0	0	3	9	1	2	0	0	0	1	3	0	46
2021	51	35	30	34	3	15	0	5	78	9	14	3	0	0	13	11	0	301
2022	38	40	18	41	0	8	0	0	126	11	20	1	0	39	28	21	0	39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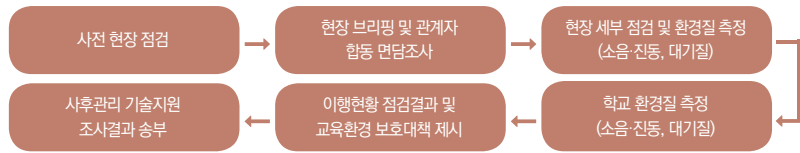
3.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업목적



공사가 진행 중인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을 대상으로 통학안전, 대기질, 소음·진동 등 승인내용의 이행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시·도교육청 현장을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 전문적인 상호관리 체계를 형성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효율적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중장기적 사후관리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운영체계



추진결과

2020년(시범사업)
: 5개소(10개교)

2021년
: 10개소(20개교)

2022년
: 10개소(28개교)

**교육청 업무
담당자 만족도**
(7점 척도, 100점 환산)



**학교 관계자
만족도**
(7점 척도, 100점 환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사업목적



전국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전산화·시각화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모든 학교의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에서 정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이용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를 위한 지형 도면, 전산 도면, 지반 일람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공합니다. 또한 심의도면 작성 등 교육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수정합니다.

운영체계



추진결과

관리시스템 업무지원

(단위:건)

구분	설정·고시	지도 수정	서비스 요청	합계
2018	1,584	193	163	1,940
2019	1,251	230	315	1,796
2020	1,313	207	354	1,874
2021	1,653	124	434	2,211
2022	1,417	83	476	1,976

관리시스템 업무지원 만족도

(단위:점)

구분	업무지원 신속성	업무지원 정확성	메뉴접근 편의성	메뉴 활용성	메뉴 효용성	평균
2020	83.5	90.7	86.0	-	86.0	86.6
2021	88.0	90.5	85.9	85.2	84.5	86.8
2022	91.6	91.4	89.6	89.4	88.6	90.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5.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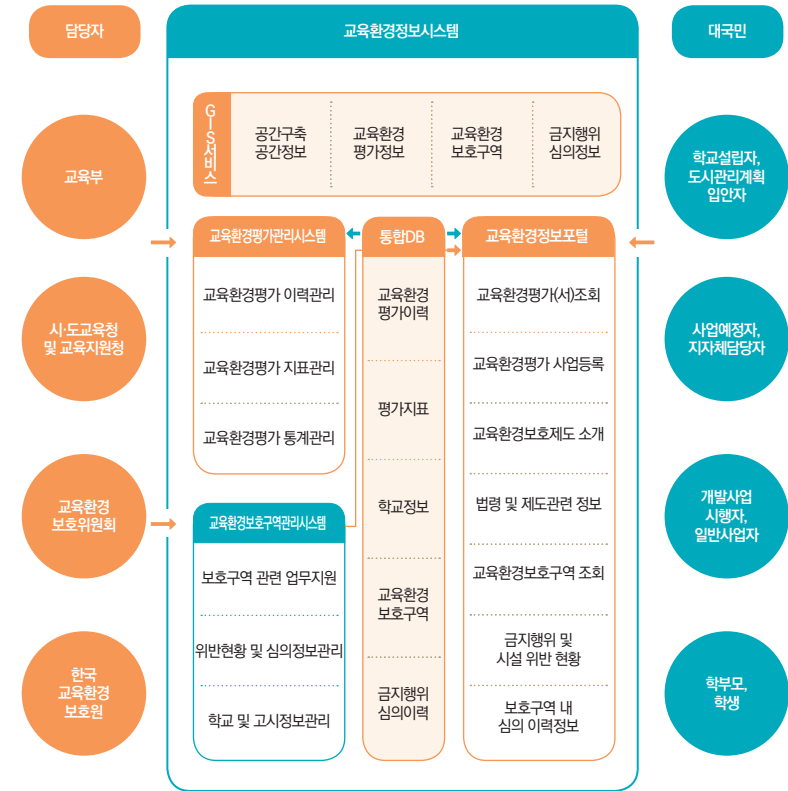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 및 인프라를 관리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합니다. 기능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업무를 지원합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https://eeis.schoolkeep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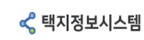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성과

운영체계



OPEN API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교육환경평가

1. 주요 내용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3. 교육환경평가 기준
4. 교육환경평가 절차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I 교육환경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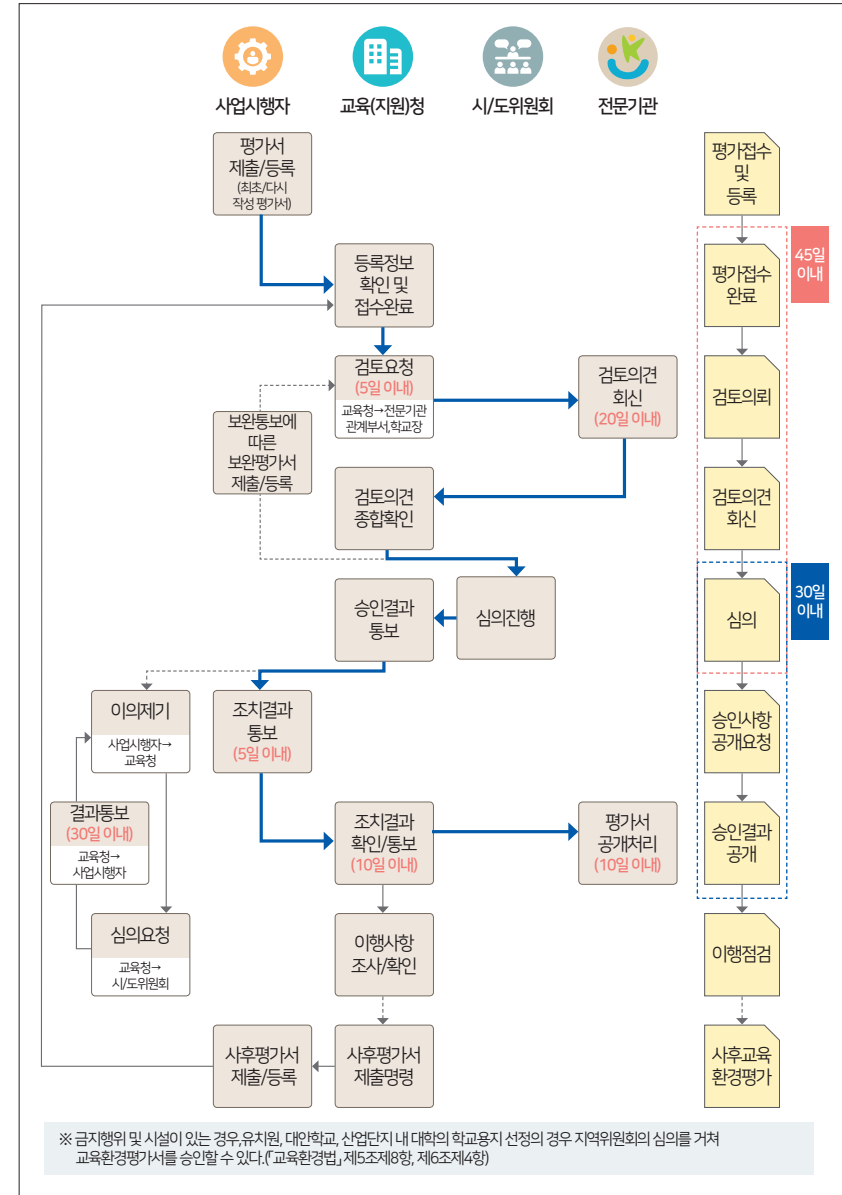
1 주요 내용

- 「교육환경법」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용어의 정의

- “전문기관”은 「교육환경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뜻함
- “운영기관”이라 함은 「교육환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위탁 구축·운영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뜻함
-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제도(교육환경평가서 전문검토,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뜻함
-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 뜻함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함

●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그림 1]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



【표 1】 절차별 수행 주체 및 내용

단계	수행 내용	주체	기간
교육환경평가 제출 및 등록	평가서 작성	사업시행자	
	평가서 제출 및 등록	사업시행자 → 교육감(교육청)	즉시
교육환경평가 접수 완료	등록 정보 확인 및 접수 완료 처리	교육감(교육청)	
검토의뢰	평가서 검토 요청	교육감(교육청) → 전문기관, 관계부서, 학교장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 필요		
검토의견 회신	평가서 검토 및 의견 회신	전문기관, 관계부서, 학교장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필요 시)		
	평가서 보완 작성	평가서 다시 작성	
심의	평가서 심의 진행	시·도위원회	
	※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의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서 승인 가능		
승인결과 통보	승인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청) →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45일 이내
	〈승인〉 조치결과 통보	〈불승인〉 이의 신청	사업시행자 → 교육감(교육청)
승인결과 공개	조치결과 확인 및 공개 처리 요청	교육감(교육청) → 전문기관	10일 이내
	평가서 공개 처리	전문기관	10일 이내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시기

▶ 대상

1)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 **[대상]**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학교를 다른 위치로 이전할 경우 포함)
- **[주체]** 계획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
- **[제외]**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2)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제5호
- **[대상]**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행위를 추진하는 경우(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주체]** 정비사업 또는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 **[제외]** 폐교, 이전 등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표 2〉 교육환경평가 대상

구분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 • 개발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 ※ 작성 제외 :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가 제외되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각종학교 ※ 작성 제외 : 정보공개 제외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시, 정비사업 ¹⁾ 에 한하여 대학
기타	기존학교 이전용지 포함	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시기

1)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5항
- **[제출 기한]**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해당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예외]**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전까지 제출 가능

2)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5항
- **[제출 기한]** 해당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건축 허가 전
- **[제출 안내]** 정비사업 및 건축행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 기한 안내 필요

1) 단, 정비사업의 규모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의 의미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의 의미이나, 동 단계는 교육환경평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므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

- <대규모 건축행위의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건축허가 전까지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단계를 고려할 때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

※ 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17-117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정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

〈표 3〉 교육환경평가 시기

구분	주체	제출기한
신설학교 교육환경 평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구분	주체	제출기한	
기존학교 교육환경 평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교육환경평가 기준

▶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표 4〉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구분	항목	기준	판정 방법	적용여부	
				신설	기존
위치	일반 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상대	○	√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인접성	상대	○	√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절대	○	교육감 협의
	통학 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상대	○	√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상대	○	√
	통학 안전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부합	○	○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부합	○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상대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상대	○	√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상대	○	√
	통풍 조망 일조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부합	○	○
		통풍 및 조망 확보	상대	○	√
크기 및 외형	교지 일조시간 확보	절대	○	○	
	교지 면적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절대	○	○
지형 및 토양 환경	교지 형태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부합	○	교육감 협의
	지형 및 경사도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부합	○	교육감 협의
	풍수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부합	○	교육감 협의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부합	○	교육감 협의
토양 환경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절대	○	교육감 협의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절대	○	○



구분	항목	기준	판정 방법	적용여부	
				신설	기준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절대	○	○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절대	○	○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절대	○	○
주변 유해 환경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절대	○	○
	위험시설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부합	○	○
공공 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부합	○	○
	그 밖의 공공시설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가능성	부합	○	○

※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기준별 적용 여부는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표 1]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제2조 관련)을 근거로 작성함

(v) : 해당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를 생각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으로 회신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

1) **신설학교 평가기준 및 범위**

- **평가기준**
 - 6개 항목, 16개 소항목, 27개 기준
- **평가범위**
 - 신설학교는 사업완료 시를 기준으로 평가서 작성

2) **기존학교 평가기준 및 범위**

- **평가기준**
 - 6개 항목, 16개 소항목, 27개 기준
 - 기 운영 중인 학교이므로 27개 기준 중 학생배치계획 및 교지 자체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6개 기준 제외 가능(교육감과 사전협의 수반)
 - 공사 중 통학안전 기준은 5개 세부기준 적용
- **평가범위**
 - 기존학교는 공사 중, 사업완료 시를 구분하여 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및 지표적용 ("표 4. 판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구분" 참고)**

1) **평가기준 적용**

-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 시 반영

〈표 5〉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상세기준

구분	내용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학생주출입구는 집산도로 이하 주 통학로에 설치하며 차량출입구는 분리 설치 • 인근 아파트단지 또는 건물의 차량 진출입구와 학생 주출입구는 이격 배치
공사 중 통학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 • 통학로에는 공사 중 보행공간의 유효폭을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것 • 절대보호구역(50m) 내에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에 차량진출입을 제한할 것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학생배치계획 및 교지 자체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6개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일조기준은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사업 규모 및 내용, 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없는 평가기준의 경우 평가 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근거 제시 필요
-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평가항목)은 시·도교육청별 교육규칙에 따라 적용

2) 평가지표 적용

- 교육환경평가 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판단하며 평가기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상대평가, 부합평가로 구분함
 - 절대평가 : 법적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 실시
 - 상대평가 :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기준에 대해 5단계의 판정조건을 설정하여 점수평가(매우 미흡(1)-미흡(2)-보통(3)-우수(4)-매우우수(5))로 평가 실시
 - 부합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에 대해 부합, 미부합으로 평가 실시
- 절대평가, 상대평가, 부합평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시 학교용지 위치 변경(신설학교), 사업계획 변경(기존학교)을 우선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타당한 근거와 대안 또는 조치계획 제시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시 복수의 학교용지 위치 대안이 있을 경우 부합 여부, 점수의 비교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위치로 의사결정 하는 데에 활용 가능함

4 교육환경평가 절차

1) 평가서 작성

■ 작성주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1항
- **[사업시행자]** 평가대상 유형(신설/기준)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기존 학교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또는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 작성방법 및 기준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평가서 구성]**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가)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나) 교육환경 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자료 및 현황
 - 다)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은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등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예외 작성]**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 시
 - 가)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교육규칙에 따라 자료 일부만 제출 가능



■ 평가대상 및 기준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 **[평가 대상]** 6개 항목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 **[평가 기준]** 16개 소항목별 27개 기준
 -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와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기준 구분 적용

2) 교육환경평가서 보완 작성 및 제출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7항
- **[교육감]** 평가서 검토 결과 작성방법, 작성기준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요청
- **[보완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회까지 보완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이상일 경우 반려 처리

3)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작성 및 제출

■ 변경대상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6항
- **[사업시행자]** 평가서 작성·제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고 30일 이내 평가서 제출
- **[교육감]**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검토
- **[변경 대상]** 다음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다시 작성
 -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 작성방법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제6항
- **[평가서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준용 : 교육 규칙에 따라 내용 일부 생략 가능

4) 평가서 접수/등록 및 검토요청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업시행자]** 교육환경평가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 **[교육감]**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 보호원)에 검토 요청
 - 검토 요청에 앞서 교육환경평가서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서면 제출 자료와 시스템 등록 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권장
 -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검토 생략 가능
- **[관련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신청서

5) 평가서 검토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 **[전문기관]** 검토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회신
 - 보완 검토의 경우 검토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
- **[관계부서]** 관계부서에서 검토 후 주관부서에 결과 회신
 -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이 있을 경우 지역위원회 검토 및 결과 회신 절차 수행
- **[검토 기준]** 교육환경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가이드북 참조



6) 평가서 심의

- **[관련 조항]** 법 제5조제1항·제8조, 시행령 제10조
- **[시·도위원회]**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평가서 심의
- **[지역위원회]** 유치원, 대안학교, 대학(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내 운영하기 위한 용지선정에 한함)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평가서 심의 가능

7) 승인결과/승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승인결과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5항,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항
- **[통보주체]** 교육감
- **[통보대상]**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의 장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법 제6조제7항)를 위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승인결과 통보 필요
- **[통보내용]** 승인여부, 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 **[통보시기]** 평가서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 조치결과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5항
- **[통보 주체]** 사업시행자
- **[통보 대상]** 교육감
- **[통보 내용]**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통보 형태]** [참고서식 2]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신청시기]**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신청주체]** 사업시행자
- **[신청대상]** 교육감
- **[신청방법]**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검토방법]** 교육감은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 **[결과통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8) 승인결과 공개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7항, 시행령 제19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안) 제9조
- **[처리기한]**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내용]** 승인 통보된 교육환경평가서
- **[공개방법]**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사업시행자] 승인 통보 내용 반영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운영지침(안) [별지 4호]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제출
 - [교육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운영지침(안) [별지 4]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검토 및 “운영지침(안) [별지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전문기관] 교육감이 제출한 “운영지침(안) [별지 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에 따라 비식별 처리 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업로드 처리
- **[관련 서식]** 운영지침(안) [별지 4], [별지 5]
 - 운영지침(안) [별지 4]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서
 - 운영지침(안) [별지 5]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결과서



〈표 6〉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처리 항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구분	항목명	자료명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가 있는 정보	학교시설 평면도
		학생별 통학버스 노선/시간표
		건축물대장
		등기증명서
		학교 세부 자료 증빙서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구분	항목명	자료명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5호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종합개선안도)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관계기관별 제시의견 원본 및 조치계획 중 의견주체
		검토의견 중 금전적 보상이 명시된 자료
		협약서 (사업시행자-학교 등)
		협약 경과자료
		사후평가 첨부자료
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업체 관련 정보 참여자 인적사항 차량 번호판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등록증(작성대행업체)
		기술에 관한 자료(신기술인증서 등)
		건축물의 종단면도 및 평면도
		공중계획표
		별도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사업추진 경과사항
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학버스 노선/시간표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본보고서의 <표 10>, 상세 내용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안내서” 참고



5 교육환경평가 유의사항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등록부터 검토의뢰 단계에서 유의사항

- 해당 단계는 교육청 자체 내부 검토 기간과 같습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 서류(이하 평가서 등)는 교육청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을 통해 이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직접 접수한 평가서 등은 물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서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접수 완료 처리하여야 합니다

1)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목적]**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해당 여부
 - 교육환경평가 대상 학교 해당 여부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 준수 여부

2) 부실 작성 여부 확인

- **[목적]** 교육환경평가서의 부실 작성으로 인한 보완 기간의 연장 방지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승인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명 통일 여부
 - ※ 사업명에 지번 기재 여부도 함께 확인, 이는 교육환경평가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구역(BL) 단위별 개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여부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목차 준수 여부
 - ※ [관련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목차(예시)
 -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평가항목별 조사결과”가 작성되었는가?
 - ※ [관련 서식] 평가항목별 조사결과 작성양식 예(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확인

- **[목적]** 교육청이 직접 접수한 평가서 등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서 등의 내용 불일치 방지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평가진행처리 단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일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인’, ‘대행기관’, ‘평가유형’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지’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학교’ 정보 오류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토지이용계획도, 종합개선안도, 사업지경계를 모두 등록 여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승인신청서, 운영지침(안)의 [별지 1], [별지 2]를 모두 등록 여부
 - ※ [관련 서식] 운영지침(안) [별지 1]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별지 2] 교육환경평가 정보공개 동의서

▶ 교육환경평가 검토의견 회신 단계에서 유의사항

1) 보완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시 유의사항

- **[목적]** 보완 요구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관계기관별 검토의견과 그에 대한 보완내용, 반영여부 등 작성 여부

2) 다시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시 유의사항

- **[목적]** 다시 작성 요구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 **[내용]**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서 검토 필요
 - 사업계획 또는 설립계획 등의 변경내용과 사유 제시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전·후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제시 여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악화되거나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을 주요 검토항목으로 설정 및 조치계획 제시 여부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부터 승인사항 공개요청 단계에서 유의사항

- 교육환경평가 처리 기간의 명확화를 위하여 승인·불승인·조건부 승인 외의 표현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 지양
 - ※ 승인·불승인·조건부 승인 외의 표현 예) 보류, 보완, 재검토 등

▶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시 유의사항

- **[관련 조항]** 법 제6조제4항·제6항, 시행령 제16조제2항
- **[제출]**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평가서 제출
 - [작성내용]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교육규칙에 따라 자료 일부만 제출 가능)
- **[검토]** 전문기관 검토 생략 가능
- **[심의]** 교육장 소속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평가서 심의
- **[결과통보]**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에게 승인결과 통보
- **[이의신청]**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사후관리

1. 주요 내용
2. 사후관리 절차





III 사후관리



1 주요 내용

▶ 「교육환경법」 제정(2016.2.3. 제정, 2017.2.4. 시행)

- 기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 이에 「교육환경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사업시행자 이행 의무 부여 및 교육감 조사·확인 절차 마련

- 교육환경평가는 개발계획 등 수립단계에서 시행되므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승인(권고)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실제 공사 또는 학교 운영 시에 조치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교육환경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승인(권고)내용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은 이행 여부의 조사·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었음

▶ 사후교육환경평가(법 제7조)

- 「교육환경법」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환경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해야 함
- 「교육환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에 따라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따른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해야 함

2 사후관리 절차

▶ 대상 및 시기

1)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7조·제19조
- [대상] 승인(권고)사항이 반영된 교육환경평가서
- [주체] 교육감(공개주체), 한국교육환경보호원(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위탁), 사업시행자
- [시기] 시·도위원회 승인 이후
- [방법]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에 최종 승인(권고)내용을 반영하고, 사후관리에 활용될 이행사항 점검표가 포함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



2) 이행사항 조사·확인

- **[관련 조항]** 법 제7조제2항·제3항
- **[대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 **[주체]** 교육감
- **[시기]** 사업계획 등 확정 시, 착공 이후 공사 중, 학교 운영 시 시행
- **[방법]** 사업시행자에게 승인(권고)내용 등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관할 교육청 담당자의 사업장 출입 조사(필요 시)
 - 담당자는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3)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 **[관련 조항]** 법 제7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20조
- **[대상]** 이행사항 점검 결과,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 **[작성명령]** 교육감
- **[작성주체]** 사업시행자

▶ 절차

1) 사전확인

- ① 승인(권고)내용 반영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사업시행자에게 심의 승인(권고)내용²을 최종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요청
 - 해당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 계획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제출 요청
 - **[담당자]** 최종 평가서에 승인(권고)내용 반영 여부 확인(분야별 교육환경 평가서 참고)

② 승인(권고)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제출 : 사업시행자 → 교육감

2) 승인(권고)내용은 조치계획, 저감방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모두 평가서에 최종 반영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 설립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허가 진행 시 교육환경 평가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설립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고)내용 반영 여부 및 적절성 확인(분야별 교육환경평가서 참고)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③ 사업의 공종 변화 시 교육청 통보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사업 철거·착공·준공·중지·재개 시 등 교육감에게 통보
- **[교육감]** 사업 진행 상황을 통보받은 후 이행사항 조사·확인 준비
- **[관련 서식]** [참고서식 2]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진행현황 통보서

2) 이행사항 조사·확인

- ①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교육환경평가 승인(권고)내용에 대한 관리·이행을 준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권고)
 - **[사업시행자]**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제출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제출
 - **[관련 서식]** [참고서식 3] 승인내용 관리·이행현황(사후관리) 보고서
- ② 현장조사 계획 및 통보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이행사항 조사·확인 7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조사 계획 통보
 - **[담당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분야(통학안전, 대기, 소음·진동)별로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작성·점검
 - **[조사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점검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참고서식 4] 사업장 방문서



- ③ 승인(권고)내용 이행 여부 조사·확인 : 교육감
 - **[교육감]** 현장조사를 근거로 승인(권고)내용 분야별 이행현황 조사·확인
 - **[조사주기]** 착공 후 정기·수시 실시
 - **[관련 서식]** [참고서식 1], [참고서식 3]

〈표 7〉 이행사항 조사·확인 시기 및 방법

구분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사업 착공 전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 · 허가 시	승인내용 및 권고사항 이행 적절성, 기타 교육환경 피해 조사
공사 중	건설공정별 ※ 사업특성, 공사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확인주기 마련	
운영 시	사업 준공 시	
사업 중지 시	사업 중지 즉시	공사 중지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 조사

〈표 8〉 시기에 따른 주체별 사후관리 내용

시기	사업시행자	교육감
사업계획 등 승인·인가·허가 시	승인내용 반영결과 제출	승인내용 반영 적절성 확인
사업 착공·준공·중지 시	교육감에게 통보	이행사항 조사·확인 준비
공사 중, 운영 시	승인내용 이행	교육감 조사·확인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이행, 그 외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

3) 이행사항 조사·확인 결과 검토 및 사후교육환경평가 심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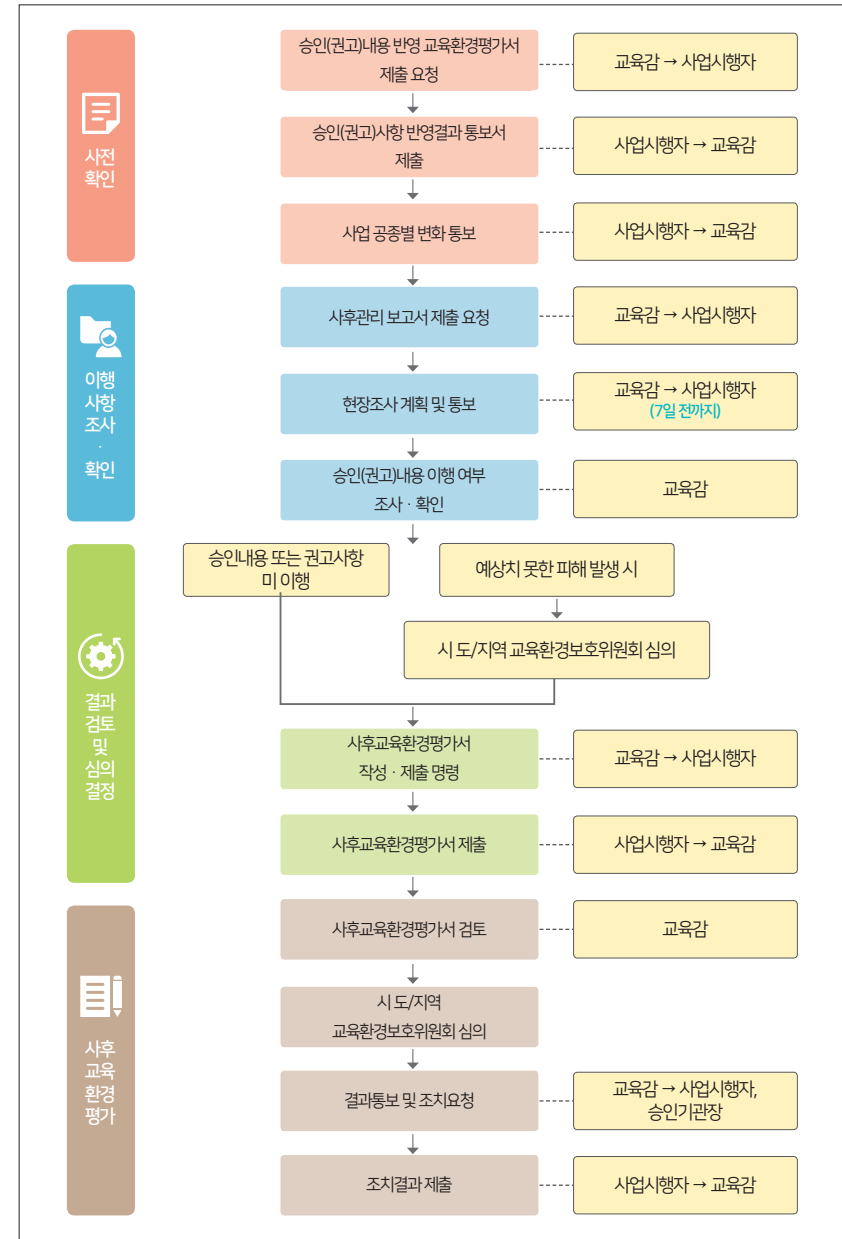
- ① 현장조사 결과 검토 : 교육감
 - **[교육감]** 이행사항 조사·확인 결과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 여부 검토
- ②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 결정 심의 : 교육감, 시·도(또는 지역)위원회
 - **[위원회]**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후 사후교육
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4) 사후교육환경평가 명령

- 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 : 교육감 → 사업시행자
 - **[위원회]** 승인 당시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교육환경평가 여부를 결정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진행
 - **[교육감]** 승인(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 환경평가서 작성을 명령(30일 이상 제출기한 부여(시행령 제20조제1항))
 - **[관련 서식]** [참고서식 5]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명령서
- ②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검토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
 - **[관련 서식]** [참고서식 6] 사후교육환경평가 검토결과 통보서
- ③ 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장
 - **[교육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요청
 - **[담당자]**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 결과 통보 및 조치 결과 요청
- ④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조치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사업시행자]**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그림 2] 사후관리 절차도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1. 주요 내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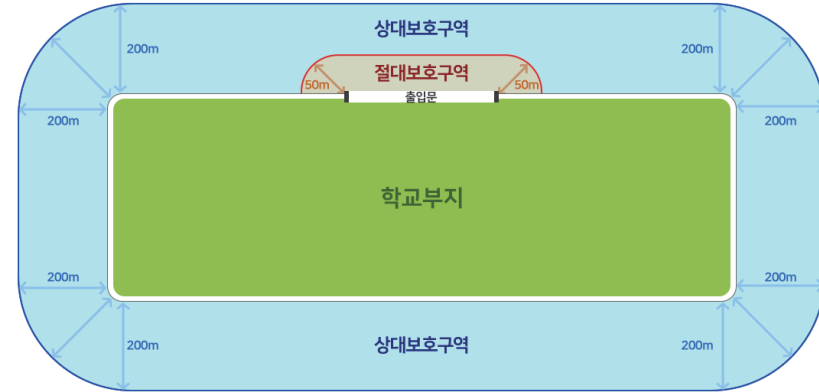
교육환경보호구역



1 주요 내용

▶ 명칭 및 기준 변경

-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그림 3]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

-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시하고 있음(〈표 9〉 참고)

※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법 제9조제14호~제27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제외시설 규정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분쇄시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멸균분쇄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에 따른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 냉·난방용 시설, 소방시설, 의료기관 내 의료용 산소공급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15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의 경우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 적용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른 숙박업 및 호텔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적용

▶ 사고대비물질 관련 금지시설 규정

- 「교육환경법」 제9조제29호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시설을 금지시설로 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거리측정 및 지적·일반 측량

- 「교육환경법」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에서 교육감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및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번간의 거리측정이 가능하지만 건축물 내 실별 측량은 불가능해 좌표가 있는 전산자료 또는 연속지적도가 포함된 PDF 도면 파일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측량업을 등록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에 제공되는 자료는 법적효력이 없음

〈표 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2022.3.25. 시행)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	×	×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	×	×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 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법령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	×	×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법령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 : 총포화약법)」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	×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법령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 설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학 (원)	관련법령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관리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제·고시

1) 설정·고시

- 학교설립예정지 통보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2항
 - [주체]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
 - [내용]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 [주체] 교육감
 - [설정고시]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고시내용] 보호구역 설정일자,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5조
 -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가능, 표지판 모형 및 제작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 참조

2) 해제

- [관련 조항] 법 제8조제4항
- [해제대상] 다음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 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 나)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관리

1) 관리주체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4조
- [관리주체]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관리 시행
 -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교육감(보호구역을 설정한 자)이 관리
- [보호구역 중복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 관리주체는 하급학교이며 동일한 학교급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관리(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로 함)
 - 단,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학교가 관리

2) 관리방법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6조
- [관리주체] 보호구역 관리자
- [관리내용] 보호구역내 교육환경 현황 조사, 금지행위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
- [관리방법] 교육환경 현황 조사자료 작성·보관
 - 그 외 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에 준함

▶ 금지행위 및 시설 조치

1)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4조
- [접수] 신청인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서와 위치도, 학교와의 거리, 건축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
- [검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심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여부 결정
-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 가능
- [결과관리]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작성·보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



- **[관련 서식]**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3호·4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2)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치

- **[관련 조항]** 법 제10조
- **[조치요청]** 교육감은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처분 및 시설물 철거명령 요청 가능
- **[조치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조치방법]** 공사 중지·제한, 영업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철거명령 가능
- **[결과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



[그림 4]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IV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 주요 내용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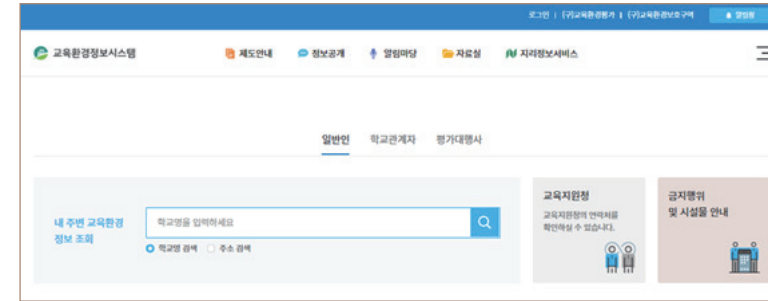
IV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 주요 내용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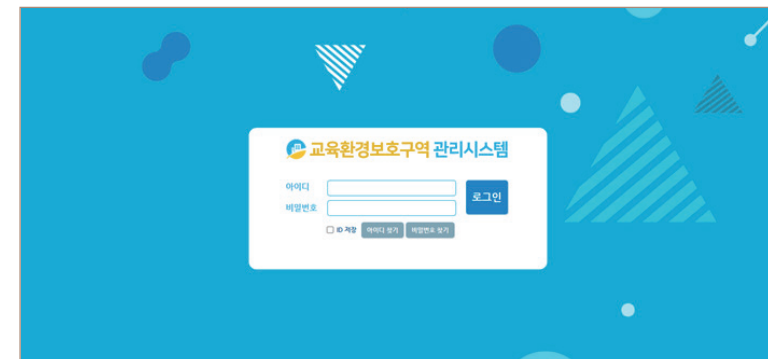
- [관련 조항] 법 제12조, 시행령 제19조
- [주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위탁]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 [활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서 정보 공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시스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그림 5]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



[그림 6]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https://epss.schoolkeepa.or.kr/mgr>)



[그림 7]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https://cuzm.schoolkeepa.or.kr>)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안)

- **[목적]**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 **[구성]** 총 19개 조항과 1개의 부칙, 별표1~3, 별지 1~8
- **[관련 주체]** 교육청, 운영기관, 사업시행자

〈표 10〉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구분	주요 임무
교육청 업무담당자 (제도담당자)	1. 교육환경평가서 등록 정보 확인 및 확인 사항 운영기관 통보 2. 교육환경평가서 공개범위 결정 3. 공개가 결정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운영기관 통보 4. 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조사결과 등록 5.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운영기관 통보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의 운영기관 통보 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위반자와 그 위반내역에 대한 운영기관 통보
운영기관 업무담당자 (내부사용자)	1.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육환경평가정보 전산등록완료 확인서 발급 2.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개대상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3.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와 위반자 및 위반내역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4.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서 보존(백업) 5. 교육청, 사업시행자, 평가대행자, 일반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등급 부여 및 관리 6.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및 평가대행자 (평가관련자)	1. 법 제6조의 교육환경평가서, 제7조의 사후교육환경평가서 등 사업정보 입력 2.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및 활용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전에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제도 담당자별 (보건, 설립, 시설)로 할당된 계정을 통해 접속 및 활용 가능

2) 메인페이지 메뉴 구성

- ① 정보관리시스템 메뉴, ② 평가진행현황, ③ 업무도움방, ④ 관련 사이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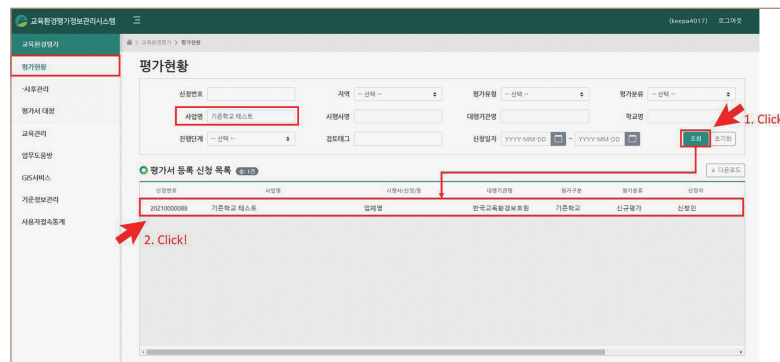
〔그림 8〕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화면 구성



【표 11】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①

메뉴	설명
① 정보관리시스템 메뉴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체 메뉴 구성 확인 가능 - 원하는 메뉴로 이동 가능
② 평가진행현황	- 평가진행현황을 단계별(신청중, 검토의뢰, 검토완료, 심의완료)로 확인 가능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관할 시·도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
③ 업무도움방	- 업무와 관련한 공지, 각종자료,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요청 목록 확인 가능
④ 관련 사이트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확인 및 이동 가능

• ① 평가진행현황 ▶ 교육환경평가에서 교육환경평가 정보 확인 및 입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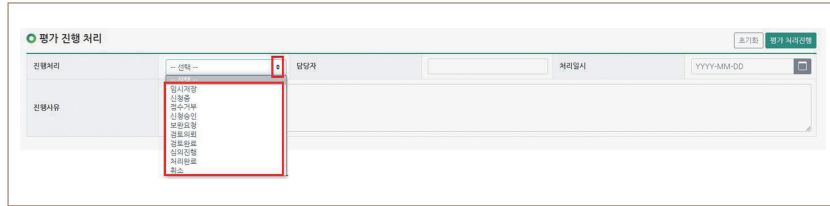
【그림 9】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현황 화면 구성

【표 12】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메뉴 소개 ②

메뉴	세부 구분	설명	
① 교육 환경 평가	평가현황	-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 접수되어 검토 및 심의 진행 중인 최초접수 또는 재접수 사업의 사업정보, 학교정보, 평가서 등 확인 가능	
	사후 관리	이행점검	- 심의 승인된 사업의 이행점검 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여 이행점검 시 활용 가능
		사후교육 환경평가	- 사후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 접수되어 검토 및 심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사업정보, 학교정보, 평가서 등을 확인 가능
	평가서대장	- 심의 승인 이후 공개된 교육환경평가서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과거 처리내역, 이행점검 결과 등)를 확인 가능	
② 업무 도움방	공지사항	- 운영기관의 각종 공지사항 확인 가능	
	자료실	- 운영기관에서 발행한 안내서, 보고서 등 확인 가능	
	서비스요청	- 운영기관에 각종 서비스(SW 개선, DB 등) 요청 가능	
③	GIS 서비스	- “교육환경정보 GIS” 페이지로 이동	



-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평가 업무 처리 및 정보 관리를 위하여 “평가 진행 처리” 단계에 대한 이해 필요
 - 평가 진행 처리 단계는 총 10개 단계로 구분
 - 평가 진행 절차에 맞추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변경 필요



[그림 10]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 평가 진행 처리 단계



〈표 13〉 교육환경평가 정보관리시스템(평가현황)사업상세페이지)평가진행처리) 단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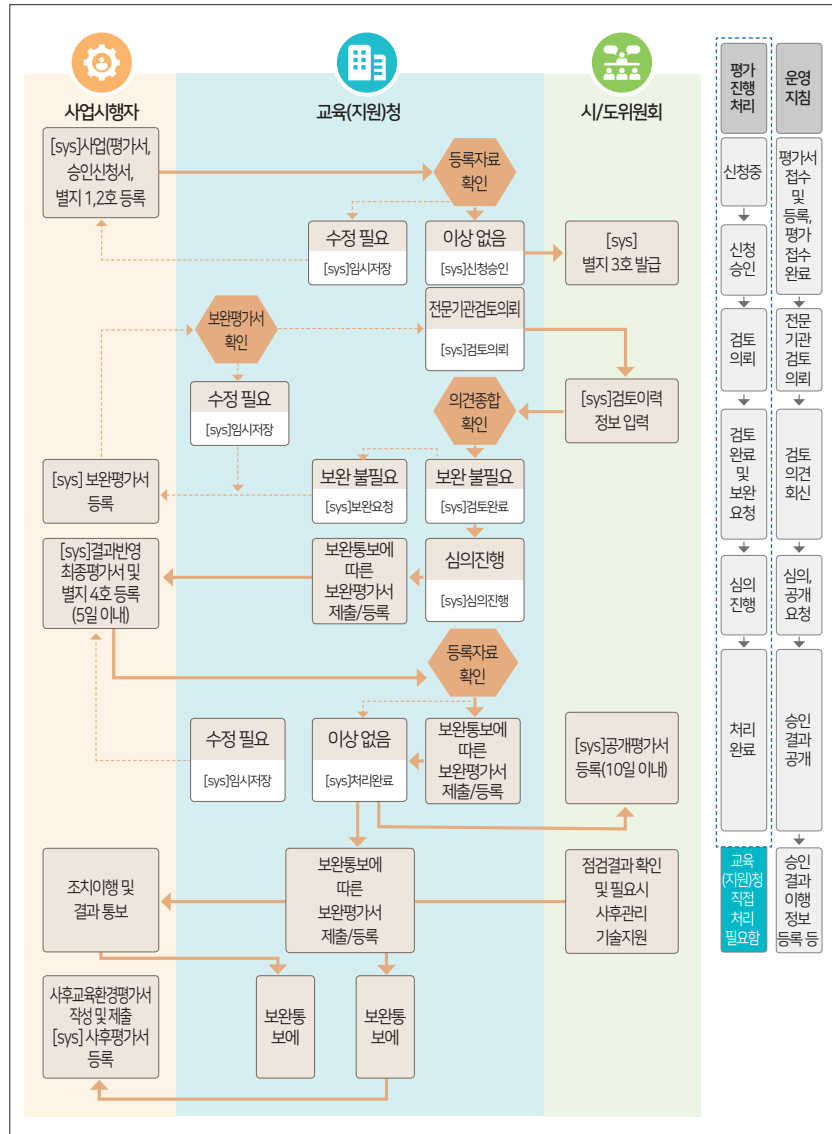
평가진행처리 단계	설명
신청중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최초 등록한 때, '정보관리시스템'의 진행 단계는 '신청중'으로 나타남
신청승인	- 등록된 평가서와 관련 정보에 대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해야 함
임시저장	- 사업시행자가 평가서와 관련 정보 등록 완료 후 불가피하게 직접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해야 함
접수거부	- 승인신청 접수 절차 또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 접수를 반려하려는 경우 적용해야 함
보완요청	- 검토의견 등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검토의뢰	- 교육(지원)청이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 검토요청을 하는 시점에서 적용해야 함
검토완료	- 교육(지원)청이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아 확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적용해야 함
심의진행	-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경우 적용해야 함
처리완료	- 해당 사업이 심의 승인된 경우, 심의결과를 등록한 후 평가서와 관련 정보를 '평가서 대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적용해야 함 ※ 평가서와 관련 정보가 “평가서 대장”으로 이동되어야 평가서 공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함
취소	- 승인신청 접수가 취하된 경우 적용해야 함

※ 단, '비공개 요청', '비공개 완료' 등의 평가진행처리 단계 추가 계획



3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단계별 설명



[그림 1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도

〈표 14〉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

구분	운영지침	설명
①	평가서 접수 및 등록 ~ 평가접수 완료	- (평가서 접수 및 등록) 사업시행자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시스템에 교육환경평가서와 함께 승인신청서, 별지 1호, 별지 2호를 즉시 등록하여야 함 - (평가접수 완료) 교육(지원)청은 등록된 교육환경평가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이상이 있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정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신청 접수 완료 통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3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전문기관 검토의뢰	- 교육(지원)청은 전문기관으로 승인신청 접수 완료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③	검토의견 회신	-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교육(지원)청으로 회신한 검토의견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④	심의 및 공개요청	- (심의)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이때, 교육(지원)청은 심의결과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공개요청)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별지 4호와 함께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이는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⑤	승인결과 공개	- 교육(지원)청은 운영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비공개 요청 검토 결과(별지 5호)를 통보하여야 함. 이때, 교육(지원)청은 별지 5호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이는 별지 4호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운영기관은 별지 5호의 내용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비식별 처리하고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I. 교육환경평가

II. 사후관리

III. 교육환경보호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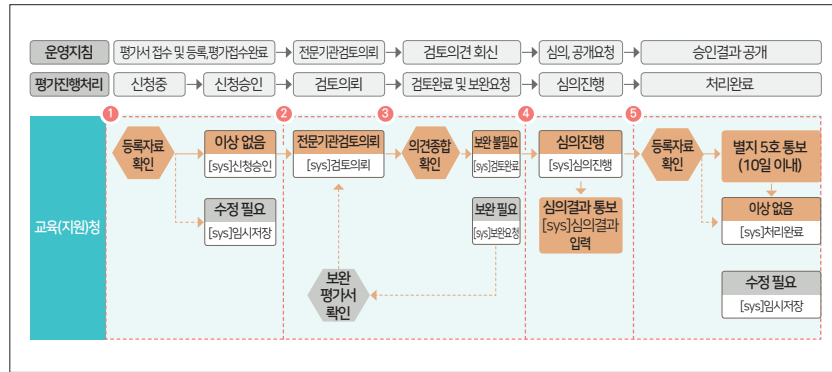
IV.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부록] 공시에 관한 설명



▶ 각 단계에 따른 교육(지원)청 역할

- 교육(지원)청의 주요 역할은 1)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 2) 교육(지원)청이 직접 자료를 등록하는 것, 더불어 3) 평가진행처리를 변경시키는 것임



[그림 12]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 절차(교육(지원)청)

〈표 15〉 교육환경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공개 절차 각 단계 설명(교육(지원)청)

구분	운영 지침	평가진행 처리 단계	설명
①	평가서 접수 및 등록 ~ 평가접수 완료	신청중 ~ 신청승인	- (평가 정보 확인) 평가현황에서 해당 사업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업시행자가 등록한 사업정보, 그 평가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승인신청 접수) 확인 결과,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평가 진행 처리에서 평가처리단계를 [신청승인] 처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임시저장]으로 처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록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신청 접수 완료로 인정
②	전문기관 검토의뢰	검토의뢰	- (검토의뢰)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의 단계를 [검토의뢰]로 변경하고 공문을 통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구분	운영 지침	평가진행 처리 단계	설명
③	검토의견 회신	검토완료 및 보완요청	- (평가서 보완 요청)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평가서의 보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 처리 단계를 [보완요청]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완 평가서를 등록할 수 있게끔 조치 • 보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검토완료]로 변경하여 해당 단계 종결 - (검토의견 확인) 교육(지원)청은 사업상세페이지 하단의 [검토이력표] 탭을 통해 전문기관(보호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음
④	심의 및 공개요청	심의진행	- (심의진행 현황 알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개최 및 진행될 때,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상세 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심의진행]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현황을 운영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심의결과 등록 방법) 교육(지원)청은 사업상세 페이지 하단의 [심의결과] 탭을 통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등록하여야 함 (최종 평가서 및 별지 4호 등록 요청) 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가 심의결과가 반영된 최종 평가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상세페이지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보완요청]으로 변경하여야 함
⑤	승인결과 공개	처리완료	- (등록된 최종 평가서 확인) 평가현황에서 해당 사업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그 최종 평가서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별지 4호 확인 및 별지 5호 등록) 별지 4호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4호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5호를 [구비서류] 탭에 등록하여야 함 - (처리완료) 위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해당 사업의 평가진행처리 단계를 [처리완료]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종결시켜야 함 ※ [처리완료]로 단계 변경을 함으로써 평가서의 공개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해당 과정을 필수 이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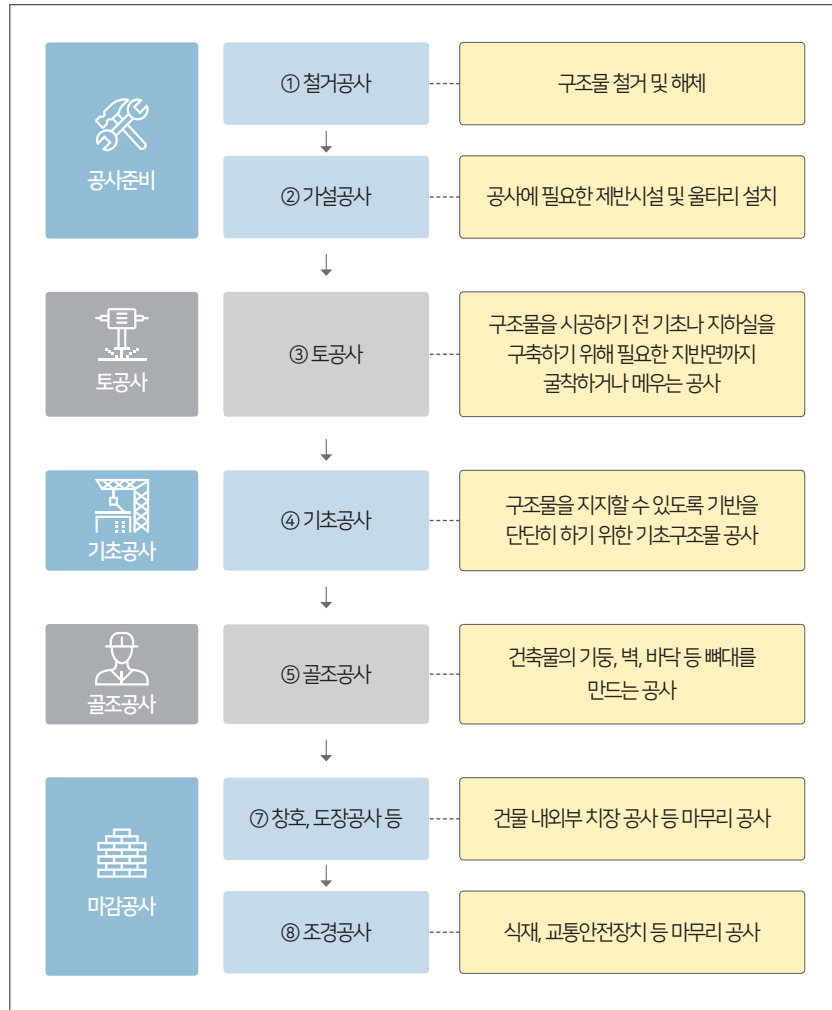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부록]
공사에 관한 설명





1 공종별 흐름도



① 철거공사

- 구조물 철거 및 필요 시 석면 해체



철거



철거마대

②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판넬), 현장사무실, 가설도로, 비계, 낙하물방지망, 임시전력, 급수설비 등



가설방음판넬



현장사무실



가설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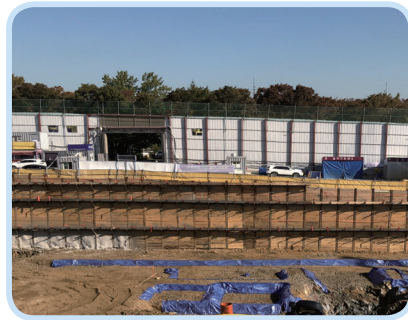
낙하물방지망

③ 토공사

- 터파기, 흙막이, 성토 및 절토, 발파, 잔토처리, 되메우기 등



터파기



흙막이

④ 기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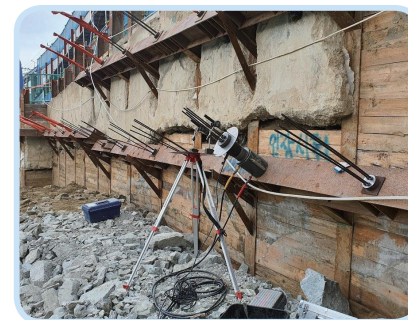
- 파일박기, 지반앵커공사, 자재운반, 타워크레인설치, 기초거푸집 설치 등



파일박기



타워크레인



앵커공사



기초 거푸집



⑤ 골조공사

-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타설 및 굳히기, 설비공사 등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갯폼 설치



소음방지 패널

⑥ 창호, 도장공사 등

- 조적, 미장, 창호, 단열, 방수, 타일, 천장공사, 도장, 도배, 바닥마감 등



창호 설치



바닥 마감공사



조적



도색



⑦ 조경공사

- 외부 경관 조경공사 등



조경수 식재



과속방지턱 설치



2 주요 건설기계장비



크레인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거나 수평으로 나르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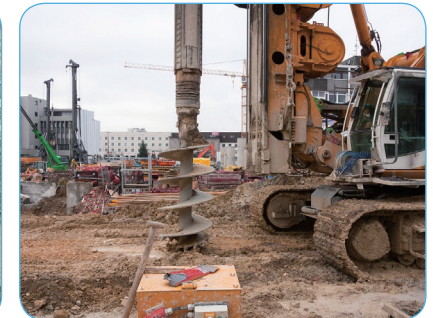
페이로더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로 골재 등을 퍼올려 이동 후 트럭이나 적재소로 옮기는 장비



콤비로올러

흙, 자갈, 모래등을 강력한 진동으로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기계로 바닥다짐작업이나 아스팔트 포장시 활용되는 장비



어스오거

나사형의 긴 축을 모터 등에 의해 땅 속에 돌려 박아 구멍을 뚫는 기계(축 전체가 나사형인 것은 연속 스크루식, 선단만 나사형인 것은 오거스크루식)



유압브레이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재료를 관통하기 위해
균일한 동력, 내구성, 파단력을 제공하는
기계



불도저

금속 날이 장착된 무한궤도 트랙터로 도로건설,
농경, 건축, 철거 등을 할 때 흙이나 바위를
밀어내는 작업에 효과적인 장비



모터 그레이더

땅바닥을 깎아 편편하게 고르거나 눈을
치우는 데 쓰는 토목 건설 기계



항타기

기초 공사에서 해머나 동력을 사용해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 파일, 시트파일 등을
땅에 박는 기계



트렌처

여러개의 굴착용 버킷을 부착시키고
주행하면서 도랑을 파는 기계



레미콘믹서차량

콘크리트를 섞은 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동안 재료의 질을 균등하게 하고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 휘저어 섞는 기계





성토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일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터파기

구조물 건설 시 기반을 닦기 위해 흙을 파내는 작업



골조

건물의 주된 뼈대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후 굳기 전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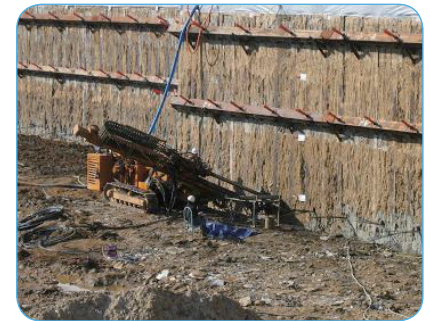
비계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흙막이

높은 곳의 흙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거나 건물의 지하를 팔 때 생기는 흙의 압력 때문에 건물 주변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구조물



앵커공법

붕괴 우려가 있는 경사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흙막이 뒷면의 흙 속에 보조 장치를 설치하는 공법



갯폼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지 않으며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대형 거푸집



알폼(알루미늄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거푸집



파일(말뚝)

기초공사를 위해 박는 말뚝으로 콘크리트 파일, 시트파일, 강관파일, PHC파일 등이 있음



토류판

'H' 자 모양으로 된 빔을 땅에 박고 파 내려 갈때 아래 철골 사이에 끼우는 흠막이용 두꺼운 판자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T타워크레인

탑 위에 선회하는 기계대를 싣고 고층건축에 사용되는 기중기



L(러핑)타워크레인

상하로 움직여 고층 건축에 사용되는 기중기로 고공권 침해를 줄임



건설용리프트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설비 장치



보강토옹벽

콘크리트블록에 섬유보강재를 끼워 펼쳐 흙을 채워 자중, 마찰력 등으로 붕괴를 방지하도록 만든 옹벽



가설울타리

작업장의 비산먼지를 차단하고 가설재의 용도로 사용하며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울타리



세륜 시설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어 비산먼지 등을 줄이는 시설



아스콘포장

도로포장의 대표적 포장방법으로 아스콘을 고온, 고압으로 롤러 등으로 압착하여 시공하고 학교에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에 주로 사용



미끄럼방지포장

아스콘포장의 상부에 아크릴 등의 재질로 도막을 입혀 보행안정성, 노후화, 부식 등을 개선하는 포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등에 주로 사용

※ 출처: 한정화 외, 『교육환경평가의 이해(기존학교)』, 경상남도교육청(2022.12), 58~67p

집필진

과제책임자	임홍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참여진	김진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박경훈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고정훈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김선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강은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자문관	최경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박금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미	충청남도교육청
	이아름	경상남도교육청
협력관	나광필	교육부
	박형민	교육부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

발행 2023년 7월
발행인 조명연
발행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47-4 3,4층
전화 (043) 710-4000
팩스 (043) 710-4004
<http://www.schoolkeepa.or.kr>